

---

#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 디자인 행정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

---

2006. 12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발 간 사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유의 차별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환경, 지역산업, 지역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로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디자인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디자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관련 행정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디자인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디자인행정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디자인 행정조직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디자인계획의 수립, 디자인사업 시행 및 관련제도 정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디자인행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발간한 본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이 디자인행정조직을 새로이 구축하여 디자인행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외 디자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디자인 행정조직을 구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행정 수준을 높이는데 본 매뉴얼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매뉴얼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전문가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월 2월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이 일 규

## I.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방법

- 1.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목적 1
- 2.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활용방법 2

## II. 디자인과 도시

- 1. 디자인 도입이 필요한 이유 4
- 2. 우리 도시속의 디자인 사례 7
- 3. 디자인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10
- 4. 성공적인 디자인 도시 12

## III. 지자체 디자인행정의 개념과 대상

- 1. 디자인행정의 개념 16
- 2. 디자인행정의 대상 17

## IV. 지자체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구축

- 1.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필요성 및 구성 19
- 2. 디자인담당부서의 구성 및 역할 21
- 3. 디자인담당부서의 업무분장 22
- 4. 디자인담당부서의 단계별 발전방향 24
- 5. 디자인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및 역할 25
- 6. 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27

## V. 지자체 디자인 계획 수립

- 1. 지자체 디자인 인프라 기초조사 30
- 2. 지자체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31
- 3. 지자체 디자인 상세계획 수립 32

## VI. 디자인사업 시행

- 1. 디자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35
- 2. 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36
- 3. 디자인사업의 사후관리 38

## VII. 지자체 디자인행정 관련제도의 정비

- 1. 디자인조례의 필요성과 의의 40
- 2. 디자인조례의 주요 내용 구성 41
- 3. 디자인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 사항 45
- 4. 디자인 적용사업 추진 시 주요 제도 사항 47

## 부록

### 1. 국내 지자체 디자인행정 사례

1) 안양시의 디자인행정 사례	51
2) 김해시의 디자인행정 사례	53
3) 서울특별시의 디자인행정 사례	56
4) 국내 디자인행정 사례 종합 정리	57

### 2. 일본 디자인 행정사례

1)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접근방법	59
2)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3가지 운영방식	60
3) 일본 광역지자체의 경관행정체제	62
4)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운영조직	63
5) 후쿠오카의 도시경관디자인 행정사례	64
6)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 행정사례	66
7)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운영 사례	68
8) 일본의 도시계획 공무원 채용제도	70

### 3. 국내 디자인행정조직 관련 참고사례

1) 서울특별시 경관행정조직의 강화방안	72
2) 광주광역시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74
3) 충청남도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75
4) 경기도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76
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경관 전담반 설치계획	77

### 4. 국내 디자인행정일반 관련 참고사례

1) 광주광역시 경관 가꾸기 실천방향	79
2) 광역-기초지자체간 경관디자인행정	81
3) 경관계획의 수립 지침의 예	85
4) 디자인 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	86

### 5. 국내 디자인행정 제도 관련 참고사례

1)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 규정	88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90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조례	91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94
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시행규칙	96
6) 프랑스 라테팡스: 1% 예술품 설치조례	97

## I.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방법

1.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목적
2.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활용방법

### 1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목적

#### ■ 디자인행정 조직체계 구축의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인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행정 조직을 아직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규 구축을 추진하려는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에 대한 기본적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 국내외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 디자인행정조직 체계 구축의 선도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향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계획, 시행 및 제도 정비 등 디자인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 디자인 계획 수립, 디자인 사업 시행, 관련제도의 정비 시 고려해야 할 기초적인 절차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행정을 준비함에 있어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을 도모합니다.

#### ■ 디자인행정 도입의 필요성 인식 및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 지자체 디자인행정의 이해관계자들이 디자인행정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국내외 디자인행정에 대한 다양한 참고사례 제시

- 국내외의 디자인행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여건과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2 디자인행정 매뉴얼의 활용방법

### ■ 매뉴얼의 구성

- 본 매뉴얼은 지자체에서 디자인행정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디자인행정조직에 초점을 두면서도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매뉴얼의 본문은 디자인도입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소개,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구축, 디자인계획의 수립, 디자인사업의 시행, 디자인행정 관련제도의 정비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부록에서는 먼저 국내 선도지자체의 디자인행정 사례 및 일본 디자인행정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행정조직, 계획 및 시행, 제도 측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 ■ 매뉴얼의 활용방법

- 디자인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맡을 디자인담당부서를 구성하고, 관련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 및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 등 디자인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준비사항을 이해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계획 수립, 디자인 사업 시행, 관련제도의 정비 시 고려해야 할 기초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여 기존의 지자체의 행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점들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합니다.
-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디자인행정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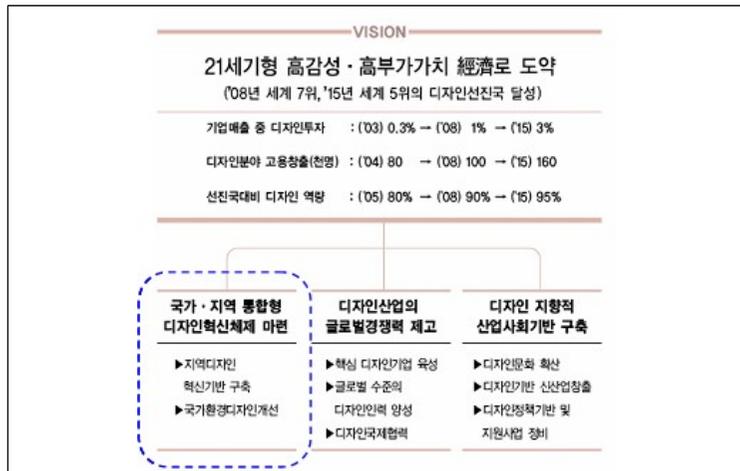
## II. 디자인과 도시

1. 디자인 도입이 필요한 이유
2. 우리 도시속의 디자인 사례
3. 디자인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4. 성공적인 디자인 도시

## 1 디자인 도입이 필요한 이유

### ■ 디자인의 중요성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디자인은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상품이 아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식기반 산업인 디자인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디자인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디자인 기반 구축, 지자체의 환경디자인 개선, 디자인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진흥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디자인 산업 발전전략 - 산업자원부>

### ■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 지자체에서 디자인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디자인과 상품디자인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지역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 이후 지자체에서는 지역 BI(Brand Identity), CI(City Ident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BI, CI 제작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디자인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는 자신만의 도시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 도시환경, 문화산업, 관광산업, 지역특산물 상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접목하여 통합 디자인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디자인통합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디자인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디자인 조직을 구축하거나 조직신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제 지역 디자인 혁신, 지역 환경디자인 개선은 지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은 일부 사업의 부가적 업무가 아닌 지자체 행정 전반의 경영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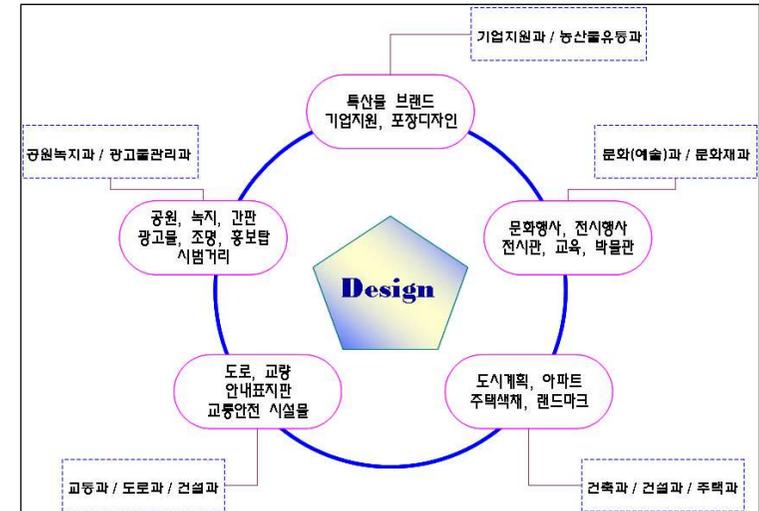


<지자체 디자인 도입의 기대효과>

## 2 우리 도시속의 디자인 사례

### ■ 디자인 사업

- 디자인 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존의 도시를 가꾸고, 가로를 정비하거나 특산품의 포장개발, 공원 건립,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사업들은 모두 디자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존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개별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미흡하고, 기능적인 면만이 중시되어 도시속의 각종 디자인 결과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거나 결과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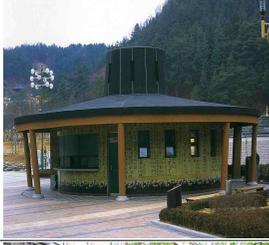
< 디자인 적용 범위 >

■ 도시의 통합 디자인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거의 모든 것들은 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이 가지는 강점을 부각시켜 통합적인 계획아래 디자인 사업을 실시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정류장	
	가로등과 거리	
	공공 시설물 야간조명	

※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 이미지는 디자인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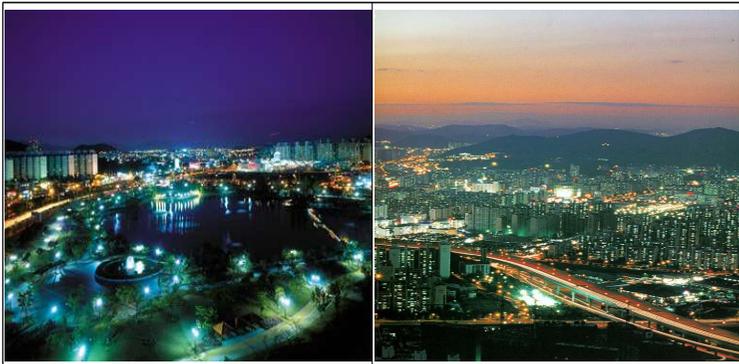
	전선 지중화	
	안내 표지판	
	관광지 시설물	
	옥외 광고물 정비	

※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 이미지는 디자인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3 디자인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 ■ 선도 지자체의 디자인 사업현황

- 현재 디자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디자인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디자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이후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김해시는 2000년 도시디자인과를 설립, 해반천 야간경관, 왕릉길 조성사업, 아름다운 주택모델 개발 등 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도시정체성 확립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안양시의 경우 예술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도시 창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 아트시티2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경관, 예술공원 건립 등 도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해시의 연지공원 전경과 (좌) 안양 아트 시티 21 프로젝트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안양시의 전경 (우) >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7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전담조직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경관의 토털 디자인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디자인 전담팀을 만들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디자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조형물과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등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그 이외에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디자인 조직 구성 및 디자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사업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멋스러움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살기 좋은 도시의 형성, 지자체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디자인 사업은 현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구축, 지역 핵심역량 강화, 지역 내 성장 동력 마련 등의 목표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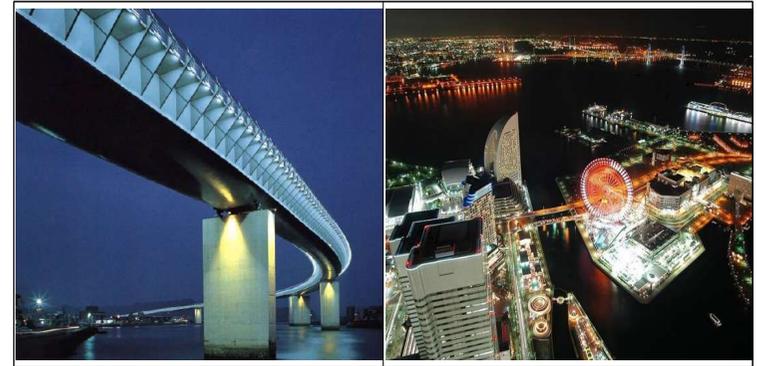


< 서울시의 대표적 디자인 사업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 조감도 (우) >

## 4 성공적인 디자인 도시

- 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외국의 경우 일찍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관·주민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 리모델링에 성공하였으며, 관광 등 각종 부가수입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일본 구마모토 현은 아트폴리스사업으로 10년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지역이미지 혁신과 1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으로 국제적인 관심까지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구마모토 현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뛰어난 건축물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유명건축가를 초빙하여 주로 경찰서 등 공공건물이나 공영주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구마모토 현은 적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내외의 건축가를 선정하는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여 커미셔너로 하여금 현 내 건축물과 관계하는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조정하며, 건조물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 이후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지어진 건물이 상업광고의 배경으로 쓰이고, 성공사례를 보기위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활성화와 더불어 특산물 판매와 관광수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일본 요코하마 시는 1971년부터 도시디자인을 계획·집행하면서 디자인의 원칙과 개발목표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자연적 특징과 역사적 문화자산 등의 고유자원을 살려 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여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요코하마 시는 도시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 나갈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기획조정국으로 배치 받아 도시디자인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외부전문가가 복잡한 행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 내부에 디자인 전문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 조직은 도시공간을 디자인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키는데 있어 공공과 민간시설을 동일한 지역적 목표에 따라 디자인 하고, 이러한 도시공간 디자인을 지향해 기획·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도시디자인 행정의 역할로 삼았습니다.
- 도시 디자인 조직은 예산확보, 주요 부처 설득 등의 난제를 극복하고, 시내 공원 정비, 지구정비, 상점가 정비와 함께 가로시설물 개발 등 통합적 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 구마모토 현의 아트폴리스 정책으로 탄생된 우시부카 하이야 대교와(좌)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만들어진 야간경관(우) >

- 일본 5대 도시 중 하나인 후쿠오카 시는 1990년부터 후쿠오카 시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1600만명이 찾는 거대한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도시디자인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후쿠오카 시는 도시 정비국 내에 따로 도시경관실을 두고 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조례와 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련부서간의 횡적인 협의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함으로써 주민 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0~30년 일찍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면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민간기관과 협의하여 꾸준히 실시한 결과 성공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지자체도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후쿠오카의 대표적 건축물인 캐널시티의 선플라자 건축물과(좌)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후쿠오카 타워(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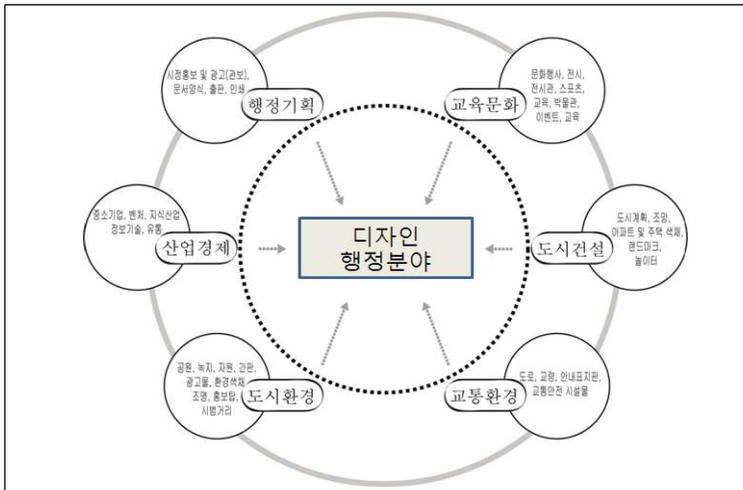
### III. 지자체 디자인행정의 개념과 대상

1. 디자인행정의 개념
2. 디자인행정의 대상

## 1 디자인행정의 개념

- 디자인행정은 최근 지자체가 일반 행정조직과 절차에 따라 지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개념 적용과 디자인적 접근방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 디자인행정은 산업경제, 도시환경, 교육문화 등 다양한 일반행정분야와 협력하여 디자인 컨셉을 적용한 사업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행정은 지자체의 차별적 이미지 및 환경 형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주민 삶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지자체 행정과 추진사업을 통합적이고 조화롭게 바라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행정분야입니다.

<디자인행정의 적용영역 예시>



## 2 디자인행정의 대상

- 디자인행정의 대상은 정부 또는 공적부문의 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공 영역의 디자인으로 민간부문의 개별 주체가 중심이 되는 사적영역과 구별되며,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향합니다.
- 여기서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및 공공이미지정보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지칭하며, 공공제이거나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사유재(건물 외관이나 옥외광고물 등)를 포함합니다.

<디자인행정의 디자인 대상 : 공공영역의 디자인과 세부항목>

영역 분류	세부 대상 항목	관련 부서 예시
공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관(Landscape) : 일정한 공간단위의 통일적인 외관</li> <li>• 공공건물 : 관공서외 공공 문화시설 등</li> <li>• 도로 : 인도와 차도 등 교통공간</li> <li>• 개방공간(Open Space) : 공원, 광장, 녹지 등</li> <li>• 역사 공간 : 궁묘능원 등 문화유산과 전통거리</li> <li>• 특별지역 : 문화, 관광 등 특별 지정 지역</li> <li>• 도시색채계획</li> <li>• 야간조명계획</li> </ul>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축/주택과 문화재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시설물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시설물 : 가도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li> <li>• 기타 공공시설물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장치물</li> </ul>	교통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이미지·정보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상징물 : 각종 국가 문장과 정부 기관의 표지</li> <li>• 지자체 행사 상징물 : 국가 의례, 국제 행사 등의 상징물</li> <li>• 지자체 정보시스템 : 정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시스템</li> <li>• 지자체 간행물과 포스터 :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 포스터</li> <li>• 지자체 상징물 : 지자체 CI와 지역 축제 관련 상징물 등</li> <li>• 교통안내시스템 : 도로 표지판, 신호체계 등</li> <li>• 관광정보시스템 : 각종 관광정보시스템과 관광지안내판 등</li> <li>• 옥외 광고물 : 간판, 전광판 등 각종 옥외설치 광고물</li> </ul>	기획/홍보과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과 도로과 등

※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내부 자료를 부분 수정 및 보완

## IV. 지자체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구축

1. 디자인 행정 조직체계의 필요성 및 구성
2. 디자인담당부서의 구성 및 역할
3. 디자인담당부서의 업무분장
4. 디자인담당부서의 단계별 발전 방향
5. 디자인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및 역할
6.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1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필요성 및 구성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업무담당자 형태의 기본적인 디자인담당부서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위상도 도시개발, 도시계획, 문화예술, 관광진흥, 기업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부서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통일된 이미지를 고려한 일관된 디자인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일반행정 전분야에 걸쳐 디자인 적용에 관한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디자인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내·외부의 조직역량을 보완하면서도 결집시킬 수 있는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내부차원에서는 디자인담당부서를 구성하고, 관련 행정부서는 물론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자인실무 협의기구를 구축하며, 지자체 외부 차원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디자인 심의·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디자인 사업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될 지역주민과 관련 지역언론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특정지역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게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디자인행정 조직체계의 구축은 지자체가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관련행정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테스크포스팀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내외부의 조직체계를 분화하고 공식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디자인 행정조직체계의 역할 및 조직명칭 예시>

조직체계	주요 역할	조직명칭 (예시)
디자인 담당부서	• 지자체 내 디자인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디자인계획 수립, 사업 기획 및 협의조정 등 담당	디자인행정과(팀) ○○디자인과(팀) ○○디자인추진기획단
디자인 실무협의기구	• 지자체 내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디자인관련 사업계획, 사업선정, 사업시행 과정에서 실무적 내용 협의·조정	디자인실무협의회 디자인실무협의기구 디자인실무협의단
디자인심의 자문위원회	• 지자체 내 조직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지자체 디자인사업계획, 사업선정 및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	디자인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디자인자문단
디자인 시민협의체	• 지역주민, 언론, NGO 등 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민·관○○디자인협의회 ○○디자인 협의체

※ 조직 설립 시 명칭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자인 사업에 맞는 명칭을 수립하며(산업, 도시, 환경, 문화 등) 조직규모는 해당 지자체의 디자인 사업 중요도와 업무량에 맞게 과와 계 또는 전담반을 설립함

2 디자인담당부서의 구성 및 역할

■ 디자인담당부서의 필요성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담당행정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디자인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담당부서의 구성

- 지자체의 행정여건과 디자인업무의 적용범위에 따라 적절히 구성되, 디자인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전공 석·박사급 또는 현업 경력자인 전문 계약직과 관련직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 디자인담당부서 역할 설정: 사업기획 및 협의·조정, 사업 지원

- ① 디자인 관련조례의 제정 및 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 운영
- ② 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및 디자인 사업의 지원
- ③ 각종 디자인관련 계획수립 업무의 담당
- ④ 공공사업의 디자인부문 검토
- ⑤ 디자인적용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지도
- ⑥ 디자인관련 행정부서의 디자인교육 및 정보 제공

■ 디자인담당부서 도입 시의 고려사항

- 디자인 담당부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행정부서들이 조직의 벽을 넘어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급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데스크포스팀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담당부서가 정해진 이후에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공식화하고, 지자체 내 디자인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한 전문가 및 인력의 증원도 추진합니다.

**3 디자인 담당부서의 업무분장**

- 디자인담당부서의 위상과 규모는 지자체내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장의 의지 및 디자인관련 업무량 대비 적정 담당부서의 규모에 대한 분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다양한 행정분야에 접목되어 총괄적인 기획과 사업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디자인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장급 직속 또는 기획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반적으로 디자인과는 과장급의 행정직이 업무를 총괄하며, 디자인 사업을 기획과 운영 그리고 관리로 나누어 조직을 설립하되 행정직, 건축·토목직, 디자인 전문직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디자인 기획과 운영 관리 담당은 6급 행정직 또는 건축·토목직이 해당업무의 주 담당이 되며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또는 건축·토목직 1명과 디자인 전문직 1~3명을 업무 중요도와 지자체 현실에 맞게 배치하되 디자인 전문직은 각 지자체의 주요 디자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담당부서는 초기 디자인 업무전담자를 배치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자인전담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전담부서의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조직규모로 구성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전담부서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예시>**

담당부서 내 조직구성		업 무 분 장 (예시)
디자인 총괄담당	과장 5급 (행정직)	• 디자인 사업 및 업무 총괄
디자인 기획담당	팀(계)장 6급 1명 (행정·건축·토목직)	• 디자인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 운영
	직원 7급이하 1명 (행정·건축·토목직)	• 디자인 관련사업의 발굴 및 기획 • 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 운영
	전문직 1~2명 (디자인 전공 전문 계약직)	• 디자인 관련사업의 발굴 및 기획 •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 • 디자인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디자인 사업담당	팀(계)장 6급 1명 (행정·건축·토목직)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감독 • 디자인(시범)사업 개발 및 시행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7급이하 1명 (행정·건축·토목직)	• 디자인에 특화된 발주방식 개발 • 디자인 (시범)사업 개발 및 시행 - 교량 등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사업 -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개발 및 개선사업 -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 등
	전문직 2~3명 (디자인 전공 전문 계약직)	• 디자인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디자인(시범)사업 개발 및 시행 - 교량 등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사업 -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개발 및 개선사업 -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 등
디자인 관리담당	팀(계)장 6급 1명 (행정·건축·토목직)	• 단계별 경관상세계획의 운영 및 관리 • 사업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및 관리
	직원 7급이하 1명 (행정·건축·토목직)	• 디자인 관련 차질발규 정비 • 디자인실무 협의기구 운영

- ※ 본 예시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디자인업무를 전담하는 (과) 이상의 조직구성 시의 세부 조직과 필요인력 및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한 것임
- ※ 출처 : 김해시, 서울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자료 참고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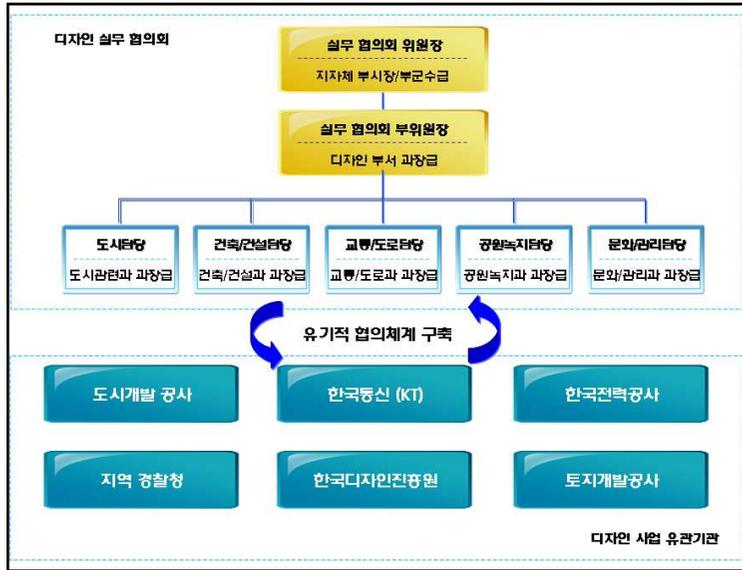
## 4 디자인 담당부서의 단계별 발전 방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디자인 담당 부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담당부서의 단계별 구축 방향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① 1단계: 디자인적용 행정부서 내 업무담당자 배치, 디자인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자문을 통한 조직 내 인식 제고
- ② 2단계: 디자인적용 행정부서를 소규모 담당부서로 편성, 디자인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자문위원회 운영
- ③ 3단계: 소규모 담당부서를 (과)수준의 독립적 전담부서로 편성, 디자인사업 관련 업무의 종합 기획 및 협의·조정, 사업관리

구분	단계별 발전 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방향	· 기존행정조직과의 협력 및 역할 정립	· 디자인 조직의 독립성 확보	· 디자인 조직의 확대, 역할 분리
인력규모	· 디자인 담당 채용 수준 · 디자인 담당 또는 TFI Team 구성	· 팀(계)수준의 조직 구성 · 디자인양정1, 디자인전문기2-3	· 과 또는 센터 수준의 조직 구성 · 각 계별4명, 수석디자인1명
주요역할	· 디자인 사업 관련 업무 협조 지원	· 디자인 사업 관련업무 협의 조정 · 자문위원회 운영	· 디자인 사업 관련 업무 종합기획 협의의 조정, 사업관리 ·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분화
조직운영	· 디자인 조직 컨셉이 미흡함 · 내부행정 조직과의 연계 필요 · 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산실운영	· 디자인 조직의 개념, 기능 정비 · 추진 정책에 따른 조직 확대 · 확대방향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행정업무와 디자인업무의 분화 ·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집중 · 각 전문디자인 영역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직개념도			
비고	· 자문위원 등 외부 협력조직 활용	· 독립조직 구성 고려 · 부서장 직속의 팀 구성 고려	· 디자인조직의 일반행정조직화

## 5 디자인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및 역할

- 디자인 실무협의기구의 필요성
- 디자인 계획, 사업의 선정 및 시행단계부터 다양한 행정부서와의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자인사업의 특성상 디자인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부서의 담당자가 모여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횡적으로는 지자체 내 행정부서간의 협의체(Task Force Team)를 구축하고, 종적으로는 관련 유관기관(도시개발공사, 한전, KT, 지역경찰청, 디자인진흥원 등)의 유기적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 디자인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관련 공무원으로 도시·건축·교통·건설·도로·공원녹지·문화정보 등 디자인관련 분야의 과장으로 구성합니다.
- 디자인 실무협의기구의 역할
- 디자인기본계획과 관련조례 등을 통해 제정된 유형별 디자인(조망, 야간조명, 도시브랜드, 색채, 시가지, 역사문화, 환경녹지, 산업단지 등)들에 대한 디자인지침을 디자인정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하는 역할
- 디자인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민과 민간사업자들과의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적으로 완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
- 시민들과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디자인관련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선도하는 역할



- 디자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 급으로 실무협의회의 의사결정 총괄을 담당하며, 부위원장은 디자인 전담부서의 과장이 담당하고, 관련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 수와 담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사업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자인 사업 유관기관은 직접 실무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디자인 사업 시행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유기적인 협의채널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의 필요성

- 지자체 내부 디자인행정조직의 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선정 및 시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위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관계공무원, 시·구의회 의원, 도시계획·조경·색채·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문화관광·디자인(산업, 환경, 시각), 홍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합니다.

### ■ 심의/자문위원회의 역할

- ①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② 디자인 상세계획 수립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③ 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④ 디자인 형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사업심의를 위한 사업 관련 사항

◆ 디자인 심의·자문위원회 운영시의 참고사항

- 위원이성이 디자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분야별 전문적 의견도출이 어려울 있을 수 있으므로 디자인전문가 pool을 확보합니다.
- 디자인기본계획에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포함하고 디자인담당부서와의 협의 하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등 디자인심의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 심의/자문위원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자문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군수)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정합니다.
- 디자인 심의/자문위원은 도시·건축·조경·색채·교통·문화 분야 등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합니다.
- 심의/자문위원회의 경우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이외에 디자인 담당 공무원과 시/군/구 의원을 심의/자문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자문위원회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V. 지자체 디자인 계획의 수립

1. 지자체 디자인 인프라 기초조사
2. 지자체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3. 지자체 디자인 상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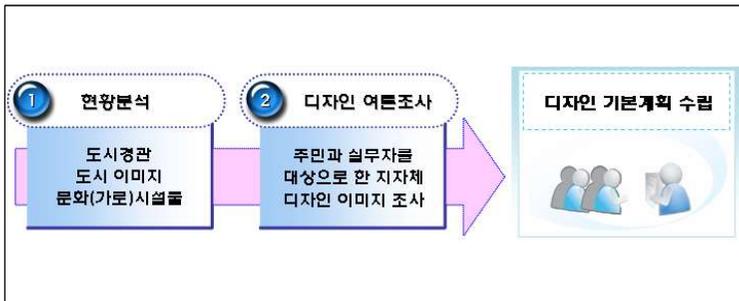
## 1 지자체 디자인 인프라 기초조사

### ■ 지자체 디자인 현황조사·분석

-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자체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도시환경, 각종시설물 등 디자인 관련 기초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디자인관련 자원조사 및 분석, 디자인 사업 관련 계획 및 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자체의 디자인특성과 잠재력 및 제약요건을 이해하도록 하며, 내부 자체 수행 또는 외부용역 발주 등을 통한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시 이미지 설정 및 디자인기본방향 도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 ■ 지자체 디자인 이미지(여론)조사 실시

-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과 관련 행정실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 이미지(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거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디자인 이미지와 실무자의 디자인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지자체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 설정

- 지자체는 디자인 기본계획상의 기본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포괄적 디자인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디자인 행정체계 정비의 실천방안을 마련합니다.

### ■ 지자체 디자인 추진방향 설정

- 향후 디자인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디자인행정의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계획) 중인 디자인 기본계획의 토대가 될 기초 연구 등을 통해 디자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기본목표 설정과 포괄적인 디자인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내부행정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의 공동연구 수행과 외부용역 발주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기본 계획의 특성

디자인 기본계획은 지자체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디자인 구상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디자인 상세계획 및 개별 디자인 사업의 기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포괄적 의미의 계획입니다.

### 3 지자체 디자인 상세계획 수립

#### ■ 디자인 상세계획의 필요성

- 지자체 차원에서 디자인 형성에 관한 장기목표와 종합적인 방향정립을 포함한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이후에는 개별적인 제도에 의한 관리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비지침 제시 및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 ■ 디자인 상세계획의 주요 내용

- ① 지자체 디자인 형성 목표 설정
- ② 디자인 사업의 주요 지역 또는 상품의 선정
- ③ 디자인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지침 마련
- ④ 지자체 디자인 상세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
- ⑤ 일정 규모 이상의 디자인 사업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 **디자인 상세계획의 특성**

- 디자인 상세계획은 지자체의 디자인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자체의 구체화된 디자인 목표 및 아이템 선정과 상세화된 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디자인 상세계획 수립 이전에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련 내부연구나 전문기관 외부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세계획에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 디자인 상세계획 운영의 기본방침

- 디자인과 관련 중요지역, 주요 아이템,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기본방침과 시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략적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디자인 상세계획의 지침으로 설정합니다.
-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개략적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디자인 상세계획의 기본방침을 선정합니다.

#### ■ 주요 지역, 아이템 지정·책정

- 디자인 상세계획의 기본방침에서 설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중요지역, 주요아이템, 특별 관리대상을 선정하거나 대규모 사업 등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형성 및 주요 건축·구조물 등의 지정과 보존계획을 책정합니다.
- 선정된 중요지역, 주요아이템, 특별 관리대상은 중점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하고, 중점대상의 경우 디자인 상세계획상의 디자인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일반대상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 **디자인 상세계획 관련 고려사항**

디자인 상세계획은 일종의 구체화된 디자인사업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업 방식·내용은 자체 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VI. 디자인사업 시행

1. 디자인사업 시행을 준비사항
2. 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3. 디자인사업의 사후관리

### 1 디자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 ■ 디자인 사업 선정

- 지자체 디자인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에 의해 선정된 디자인 사업 중에서 사업실현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지자체의 사업시행여건과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 주민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며, 관련 예산 및 재원 확보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디자인 사업 발주

- 지자체의 디자인사업 발주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입찰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디자인 품질 제고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관점을 추구하기 위해 가격의 적정성과 아울러 디자인의 독창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추진방식과 관련 예산항목 선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디자인 사업 예산 집행

- 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기획, 창작비 등은 기존의 지자체 예산항목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규정이나 조례에 규정화하거나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디자인 사업 발주 시의 주요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사업 발주 시 가격경쟁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디자인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시민공개공모, 일반경쟁입찰, 전문가 지정발주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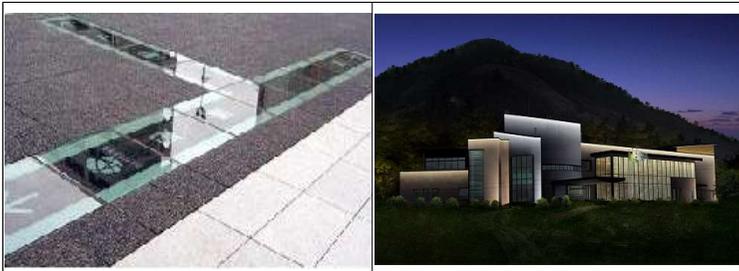
## 2 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 ■ 디자인 시범사업 의의 : 본격 추진을 위한 경험 축적과 공감대 형성

- 본격적인 디자인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사업시행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 내부는 물론 시민들의 디자인 마인드를 고양하고 디자인사업의 적극적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사업과 연계 고려

- 지자체의 자체예산을 활용한 단독적 시범사업도 가능하나 디자인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활용한 연계사업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 디자인진흥원은 국고지원을 전제로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를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국가 환경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통합 SIGN SYSTEM 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청은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국가 환경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갯바위권 해양관광지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사업과의 연계 시 고려사항

- 지자체는 디자인 기초조사와 디자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된 디자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와 시설 계획 및 재원확보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 곳에 우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자체 디자인 지원사업

국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디자인 의식 고취 국가전체 이미지 향상</li> <li>▶ 환경시설물 디자인개발, 환경디자인 개선</li> <li>▶ 2006년 7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운영</li> <li>▶ 현금분담비율 우수 및 실행예산 편성 시 우선 선정</li> </ul>
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화상품 디자인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li> <li>▶ 지역 특화 신상품 디자인개발 (시제품 개발 포함)</li> <li>▶ 2006년 1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운영</li> <li>▶ 실행예산 편성과 향후 실행계획 우수지자체 우선 선정</li> </ul>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li> <li>▶ 공공이미지, 공공시설물, 공공 공간 디자인개발 등</li> <li>▶ 2007년 사업 시행 예정</li> <li>▶ 실행예산 편성과 향후 실행계획 우수지자체 우대</li> </ul>

### ◆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관련 고려사항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디자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디자인 사업 지원예산을 지속적 확대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디자인시범사업 수행 시 지원예산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 3 디자인사업의 사후관리

#### ■ 디자인사업 사후관리 의의 : 디자인사업 결과물의 지속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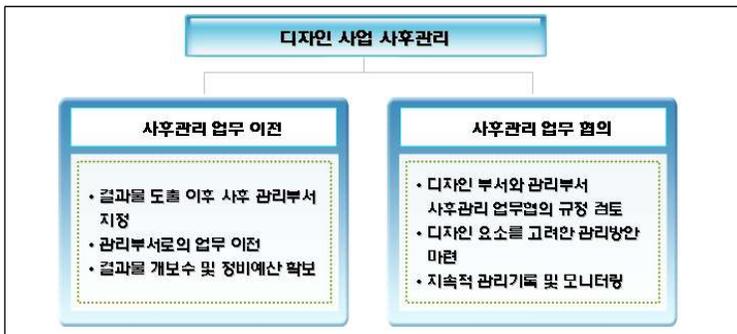
- 디자인사업 시행 후에도 디자인결과물의 유지·활용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시행 이후 관리업무 이전

-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디자인사업 결과물이 도출된 이후의 사후 관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도시, 환경, 문화, 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나 관리부서로 업무를 이전하도록 합니다.

#### ■ 사후관리시의 업무협의

- 일반적으로 디자인사업 시행 이후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단순 관리·보수 등의 개념에서 이루어지나 조형물·가로시설물 등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한 결과물이 증가하고 있어 디자인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와의 결과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 업무협의를 필요합니다.



## VII. 지자체 디자인행정 관련 제도의 정비

1. 디자인조례의 필요성과 의의
2. 디자인조례의 주요 내용 구성
3. 디자인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 사항
4. 디자인적용사업 추진 시 주요 제도 사항

**1 디자인조례의 필요성과 의의**

- 현재 지자체에는 경관조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도시 디자인조례, 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등 도시공간·문화예술·산업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따라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조례·규정·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자체에서 관련행정 분야별로 마련하고 있는 자치법규들이 중앙부처의 관련 모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행정상의 시행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디자인관련 조례를 세부행정 분야별로는 마련하고 있거나 마련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행정의 도입이 초창기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디자인행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자체 내·외부적 조직과 업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계인 디자인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디자인조례는 디자인기본계획, 디자인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지침 등에 관한 제도적 체계를 명확히 하여 디자인행정이 일관된 제도적 체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디자인조례는 지자체 내 다양한 행정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행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사업의 기획 및 실시, 디자인행정관련 부서간의 협의조정과정, 내외부적 지원체계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한 디자인행정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또한 디자인조례는 디자인행정에 관한 법적근거와 실현수단을 명문화함으로써 디자인시책을 지자체행정의 주요 부분에 위치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담당자와 일반시민에게 디자인행정의 중요성을 공포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디자인조례의 주요 내용 구성**

- 디자인조례는 디자인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 선언적 의미를 담는 것으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여 디자인행정에 따른 디자인사업을 지자체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디자인조례는 지자체 수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되, 디자인시책에 관련된 주요 규정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 디자인조례는 디자인행정의 개략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정지침, 디자인사업의 추진내용, 디자인가이드라인지침 등의 상세내용은 별도의 시행규칙 또는 시행계획 등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 디자인조례는 일반적으로 디자인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디자인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디자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주요 사항	내 용
디자인 기본계획	•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을 규정하고 기본목표/추진방향, 주요시책,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함
디자인 담당부서	• 지자체 내 디자인업무의 중심인 디자인담당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디자인실무 협의기구	• 지자체 내 관련 행정부서간의 실무적 업무조율을 담당할 디자인실무협의기구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함
디자인 업무절차	• 디자인담당부서와 관련행정부서간의 디자인업무절차 측면에서의 의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함
디자인 심의·자문기구	• 디자인심의·자문기구의 구성 및 역할을 명시하고 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디자인조례(안)의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디자인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자인기본계획) ①시장은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당 권역별·분야별 디자인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3. 디자인형성의 기본 구상
4. 지역 또는 권역별 디자인 형성 가이드라인
5. 해당 분야별 디자인 형성 가이드라인
6. 기타 디자인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디자인담당부서) 시장은 디자인행정을 운영·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을 형성하기 위하여 디자인담당부서를 설치한다.

1. 시의 디자인 형성에 관한 디자인부문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내용 협의 및 조정
3. 각종 디자인관련 사업계획 상의 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내용의 협의 조정
4. 디자인향상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실무협의회와 심의자문위원회의 운영
6. 기타 시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디자인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및 개선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 ①디자인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건축·교통·건설·도로·공원녹지·문화정비 분야담당과장 등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자인담당부서가 속한 부서의 과장(이하“디자인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디자인 형성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디자인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 기타 시장이 디자인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심의자문위원회) ①디자인 형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건축·교통·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디자인부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회 사항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절차) ①과·소장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디자인관련 업무에 대하여 디자인담당부서로 협의 요청할 때에는 업무계획서를 디자인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요청 부서장의 결재를 반드시 얻은 후 협조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디자인담당부서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디자인업무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 협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디자인담당부서장은 협의요청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협의사항이 디자인담당부서의 업무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회송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여론의 수렴) 디자인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기타 회의를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3 디자인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 사항**

■ 디자인 담당부서 설치 및 기능의 제도화

현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행정조직 내부부서간의 업무 협의·조정 을 위한 중심조직이 없음</li> <li>담당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나 규정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가 거의 되지 못함</li> <li>디자인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직 위상 정립에 애로를 겪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담당부서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자치법규 상의 조례나 업무운영 규정 등의 형태로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조례의 하위조항 또는 디자인담당부서 업무운영 규정 등의 형태 고려</li> </ul> </li> <li>◆디자인담당부서의 기능: 기획·집행,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집행</li> <li>-각종 시설의 디자인내용 협의·조정</li> <li>-각종 사업계획의 디자인 내용 협의·조정</li> <li>-디자인향상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li> <li>-디자인 실무협의회, 심의·자문위원회 운영</li> <li>-각종 공사관련 시설물의 사전 선정 및 공사완공 시 확인</li> </ul> </li> </ul>

■ 디자인 실무협의기구 구성 및 기능의 제도화

현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부행정부서 간의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제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li> <li>이로 인해 디자인담당부서와 관련 사업부서 간의 업무협업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실무협의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자치법규 상의 조례나 업무운영 규정 등의 형태로 제도화</li> <li>◆행정부서간의 (가칭)실무협의회의의 구성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건축·교통·건설·도로·공원녹지·문화정비 등 관련 분야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구성</li> <li>-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디자인관련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li> </ul> </li> </ul>

■ 디자인 업무절차의 제도화

현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관련 업무 추진 시 관련행정부서가 디자인담당부서로 협의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li> <li>디자인담당부서와 관련행정부서간의 협의업무절차의 진행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단순 업무협조나 자문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행정부서와 디자인담당부서간의 업무절차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자치법규 상의 조례나 업무운영 규정 등의 형태로 제도화</li> <li>관련행정부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의요청할 때에는 업무계획서를 디자인담당부서로 제출함을 명시</li> <li>위 경우에 협의요청 부서장의 결재를 반드시 얻은 후 협조 문서를 제출함을 명시</li> <li>디자인담당부서장은 각 행정부서로부터 제출된 디자인업무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을 명시</li> </ul>

■ 디자인 심의·자문기구 구성 및 역할의 제도화

현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지자체의 경우 디자인 관련 심의자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외부자문기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제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li> <li>이로 인해 외부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심의·자문기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자치법규 상의 조례나 업무운영 규정 등의 형태로 제도화</li> <li>(가칭)심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건축·교통·조경·색채·조형예술·조명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li> <li>-디자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자문</li> <li>-실무협의회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li> </ul> </li> <li>(가칭) 디자인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디자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li> <li>-해당업무의 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li> </ul> </li> </ul>

4 디자인적용사업 추진 시 주요 제도 사항

■ 디자인적용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다양화의 제도화

현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디자인적용사업은 다수 사업이 경쟁 입찰로 추진 증으로 우수작가나 디자이너를 유치하여 품질 높은 디자인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애로 발생</li> <li>단순가격입찰방식의 사업추진 위주로 기대되는 디자인의 품질이 확보되지 못함</li> <li>초대전, 공모전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예산감사, 규정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단순 입찰방식 위주의 일률적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li> <li>디자인적용사업 수행 시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평가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li> <li>디자인적용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이외에 공개공모, 지정공모, 전문가 의뢰 등의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이 가능하도록 함</li> </ul>

■ 디자인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화

현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디자인 예산은 우선순위가 뒤져있는 상황인데다 예산항목의 근거마저 없어 디자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움</li> <li>디자인 인력 및 사업비와 관련된 적정비용의 효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및 인력선정에 있어 지자체 디자인 사업 담당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적용사업 추진 시 건축설계비나 건축용역비에 묻혀있고, 사업비 규모도 건축물 규모에 비례한 일률적인 방식으로 책정되는 예산책정 방식에서 탈피</li> <li>디자인의 창작성을 반영된 별도의 대가 산정 예산비목과 사업비 효율 책정 기준을 마련</li> </ul>

## 부 록

1. 국내 지자체 디자인행정 사례
2. 일본 디자인행정 사례
3. 국내 디자인행정조직 관련 참고사례
4. 국내 디자인행정일반 관련 참고사례
5. 국내 디자인행정제도 관련 참고사례

## 1. 국내 지자체 디자인행정 사례

- 1) 안양시의 디자인행정사례
- 2) 김해시의 디자인행정사례
- 3) 서울특별시의 디자인행정사례
- 4) 국내 디자인행정 사례 종합 정리

### 1) 안양시의 디자인행정 사례

#### ■ 안양아트시티21 사업

##### ▶ 추진배경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 및 조성사업에 따라 건조 환경 및 도시경관이 파괴되어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도시 발전을 위하여 「Anyang Art City 21」로 명명된 Project를 추진하게 되었음.  
(일본 구마모토 현의 「Art Polis」 벤치마킹)

##### ▶ 사업목적

- 건축행위에 따라 건립되는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들의 외관 형태 등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안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준 높은 문화적 자산으로 남기고자 함

##### ▶ 연차별 사업실적

연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2	4	▶ 「AAC21」 건축자문단 구성
2003	213	▶ 「AAC21」 건축자문단 운영 ▶ 「AAC21」 기본계획수립, 제1회 건축문화상 Festival 개최
2004	113	▶ 「AAC21」 건축자문단 운영 ▶ 제2회 건축문화상 Festival개최
2005	1,091	▶ 「AAC21」 건축자문단 운영, 건축문화상 Festival개최 ▶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착수 ▶ 제2회 건축문화상 Festival개최
2006	299	▶ 「AAC21」 건축자문단 운영, 건축문화상 Festival개최 ▶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완료, 안양시모형제작 완료 ▶ 야간경관사업시행

1) 안양시의 디자인행정 사례(계속)

■ 담당부서 : 예술도시기획단의 구성

- 안양시는 '안양아트시티21'을 주요시책으로 설정하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실·국 체제와는 다르게 별도의 태스크포스팀 형식의 조직인 '예술도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도시경관팀, 아트시티팀, 공공예술팀, 광고물팀의 4개의 하위팀을 구성됨
- 도시경관팀의 업무
  - 경관계획 수립 및 조정
  -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도시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 아시아 디자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아트시티팀의 업무
  - 'Anyang Art City 21' 종합계획의 수립
  - 'Anyang Art City 21'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 'Anyang Art City 21'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 안양시 건축문화상 Festival 개최
- 공공예술팀의 업무
  - 미술장식심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 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 가로시설물(담장, 옹벽, 방음벽, 육교 등)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광고물팀
  - 광고물업무의 기획조정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게시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행정 광고물의 협의관리
  - 별도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허가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 광고물 관리 특정구역 지정

2) 김해시의 디자인행정 사례

■ 김해시 디자인행정 개요

- 김해시는 기존의 개발위주의 성장을 자제하고, 자연환경과 도시의 평화로운 공존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000월 10월 도시관리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타부서와의 협의 등 전반적인 디자인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의 구성 및 업무

- 도시디자인과는 건축미관팀, 거리미관팀, 광고물관리담당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주사급이 관리하고 있고, 예하에 2-4명의 팀원이 실무를 담당하며, 2명의 디자인 전문직을 선임하여 업무를 추진함
- 건축미관팀의 업무
  - C.I.(City Identity)계획 수립, 운영
  -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 건축미관 협의 조정
  -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
  -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 건축대상제 운영
  - 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운영
- 거리미관팀의 업무
  -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계획 수립
  - 도시경관계획수립
  - 시범가로 정비사업
  - 도시 시설의 디자인 (공원, 녹지 등, 보도블록 등 도로시설물) 협의 조정
  -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 공모전
  - 이미지통합 프로그램(디자인) 개발
- 광고물관리담당의 업무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2) 김해시의 디자인행정 사례(계속)

■ 연도별 주요 추진 사업

- 2006년
  - 거리미관 정비 사업
  -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대학로 광장 조성 사업
- 2005년
  - 장유읍하지구 경관계획 조성
  - 경관조명 시범사업 추진
  - 도시환경시설물 디자인 지침서 제작
  - 왕릉길 특성화 거리 조성
  - 도시경관 디자인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 2004년
  - 도시경관 계획수립
  - 거리미관 조성사업
  - 종로길 정비사업
  - 불법광고물 정비
  - 김해시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설치
  - 국도 14호선변 미관지구 정비
- 2003년
  - 김해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계획
  -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
  - 왕릉길 특성화 거리 조성
  -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서울특별시의 디자인행정 사례

■ 서울특별시 디자인 행정 개요

- 서울시는 2005년 1월 주택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고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조정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디자인계획의 심의 및 관리와 조정을 총괄하는 조직인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임
- 도시디자인기획단은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시정계획 전분야에 걸쳐 도시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디자인 전문가를 신규 채용할 계획임
- 또한 서울시는 최근 국제도시로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7년 중에 기존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임
- 이는 공공시설물 위주의 디자인 심의에서 탈피하여 도시 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 서울시 거점지역의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도탈 디자인 시스템을 정착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보행환경 개선, 가로 공공공간의 확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관, 시각통로의 확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창출 및 도시 스카이라인의 확보 등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하고 있음

■ 도시디자인조례의 운영

-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야간조명계획, 가로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등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통합디자인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이외에 도시건축물 등 경관에 대한 사항을 향후 설치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

3) 서울특별시의 디자인행정 사례(계속)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의 구성 및 업무

-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 행정팀, 도시디자인팀, 도시경관팀, 광고물관리팀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디자인 행정팀의 업무
  - 디자인 행정팀 업무 총괄
  - 도시디자인과 업무개선
- 도시디자인팀의 업무
  -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조정
  - 경관관련 계획 수립 및 관련법령, 제도 운영
  - 서울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조정
  - 서울성곽 야간경관조명 추진
  - 야간경관조명 정책 및 제도개선추진
  - 야간경관조명 세부 실행사업 추진
  -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제도개선 추진
  - 야간경관조명 시행사업 사후관리
- 도시 경관팀의 업무
  - 마을 만들기 사업 총괄 추진
  -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괄 추진
  - 도시디자인 포럼 운영
  - 가로시설물표준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
  - 열린 한강 경관개선 관련 업무
  - 공공디자인거리 EXPO 사업 관련 업무
  - 종로 Up-grade 프로젝트 사후관리
- 광고물관리팀의 업무
  - 옥외광고물 시책개발 및 계획수립
  -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
  - 좋은 간판(창작, 설치)선발, 시상
  - 시범, 모범가로 정비사업 관리

4) 국내 디자인행정 사례 종합 정리

- 국내 지자체 중에서 디자인행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3개 사례를 비교해 보면, 지자체의 여건과 디자인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디자인 전담조직의 설치, 디자인자문위원회의 활용,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디자인 행정의 성공적 도입과 수행에 있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 지자체에서 디자인행정은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추진의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지자체장은 지자체 내부 조직은 물론 지자체 의회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디자인 전담조직의 설치

- 다양한 일반행정분야에 걸쳐 디자인을 고려한 사업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디자인 전담조직의 형태는 ‘도시디자인과’ 또는 태스크포스팀 형식의 ‘기획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행정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총괄 기획·조정 역할이 가능한 부시장 직속기구이거나 부시장급 이상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

■ 디자인자문위원회의 활용

- 대부분 행정직과 건축·토목 기술적으로 구성된 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디자인 사업에 대한 객관적 심의·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 지자체의 디자인 특성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적합한 디자인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 일본 디자인행정 사례

- 1)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접근방법
- 2)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3가지 운영방식
- 3) 일본광역지자체의 경관행정체제
- 4)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운영조직
- 5) 후쿠오카의 도시경관디자인행정 사례
- 6)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행정 사례
- 7)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운영 사례
- 8) 일본의 도시계획 공무원 채용 제도

### 1)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접근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의 신설, 조사계획의 실시, 도시경관에 관한 심의회의 설치, 조례 또는 요강의 제정 등에 의해 도시경관행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보다도 먼저 도시경관에 관한 독자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음

#### ■ 도시경관행정의 접근방법

- 도시경관행정의 접근방법의 큰 흐름은 첫째, 제도적 체계로서 통합하는 움직임과 둘째, 운영조직에서의 조직통제 방향의 2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 2가지를 보다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제도적 체계로서의 통합 : 도시 지자체 단계의 조례와 시행령 제정
  - 운영조직에 의한 조정통제 : 운영에 관한 담당조직체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간의 조정과 협조를 통제하여 계획의 운영상의 실현성을 모색
- 일본의 경관행정을 보면 중앙부처는 경관형성 모델사업 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여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현 수준에 있어서는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책정이나 매뉴얼의 작성 등으로 대처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선진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자발적으로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
- 경관행정은 기존의 행정 분야와 달리 종합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자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행정 측에서 경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여건 중의 하나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를 들 수 있다. 고오베나 요코하마의 경우 도시경관 행정 태동 때부터 관련 공무원이 10-20년 이상 장기근무하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이와 같은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경관행정을 펼쳐가고 있음

## 2)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3가지 운영방식

- 일본 경관관리 운영의 특징은 국가차원의 시책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경관에 관한 독자적인 개선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임
- 지자체의 융통성과 특징이 강한 정령지정도시에서는 대부분 도시경관에 관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각 도시의 경관형성 과제에 대응하여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종합계획 조성에서부터 독자적인 지구제도, 조례, 가이드라인, 조성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의 전개를 볼 수 있음
- 일본의 도시경관행정의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시별로 각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 왔으며, 이를 성격에 따라 종합관리형, 공공주도형, 중간관리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 종합관리형

- 종합관리형은 도시의 개성을 형성하는 자연지형 또는 풍부한 역사자원을 가진 도시들의 경우에 많이 적용됨
- 이는 주민의 지지를 얻기 쉬운 대상을 중심으로 경관형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민 합의를 통해 유도하면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경관시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틀로서 경관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함
- 이 운영방식의 장점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의 질이 보장된다는 것과 새로운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경관에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체환경과 조화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임
- 단점으로는 경관 가이드라인의 책정 시에 미리 시민 전체의 일치된 합의의 도출과정이 필요하나 이 합의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조례라는 법적수단을 통한 제도의 경직성과 한계, 그리고 새로운 도시개발의 변화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2)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3가지 운영방식(계속)

### ■ 공공주도형

- 공공주도형은 도시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대부분의 중소도시 중에서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도시경관사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이 경관형성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 및 도시전체로 확산시켜가는 운영방식임
- 이는 자연요소와 역사적 요소를 통해서 도시전체에 적용할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 어려운 도시 또는 경관행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가 빈약하고 개성이 약한 도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임
- 이 운영방식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관협정과 같은 주민참여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점임
- 단점으로는 비교적 시가지조성이 미비하고, 도시의 개발 잠재력과 변화속도가 빠른 도시에는 적합하나 어느 정도 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 중간관리형

-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전반적으로 운용하되, 시가지 중심지나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주도형의 운영형태를 병용하여 이중적으로 시책을 전개하는 방식임
- 이런 운영체제는 정취 있고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도시정비의 과제에 대해 비교적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 도시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종합관리형과 공공주도형의 장점을 딴 운영형태임

3) 일본광역지자체의 경관행정체제

- 경관행정조직 초기단계에서의 경관담당부서는 경관행정조직 초기단계에서의 경관담당부서는 기획, 도시계획, 문화교육으로 분류되어 담당, 계, 주사로 소속되었음
- 이후 경관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 조직이 개편되어 4-10명 정도의 과 또는 실로 독립되어 운영되어 왔음 이로 인한 담당부서의 명칭도 경관과 함께 △△디자인 이라는 조직 명칭을 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의 경관행정체제의 특징으로는 행정내부의 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관련 타부서와의 의견조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임 상설 시스템만이 아닌 프로젝트에 따라 조정하는 시스템, 비공식적인 조정방법을 채택하는 도시 등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도시가 어떤 형태로의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이처럼 경관행정체제 있어서는 종합적인 행정기관의 연계를 도모하며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경관관리조직과 행정내부에서의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경관행정의 총체적인 조정자로 경관담당부서의 조직적인 위치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일본 정령도시의 경관행정조직체계의 예>

담당부서	담당조직체계	인원
도시정비국 계획부 도시경관실	실장, 경관계장, 주사, 주임, 기사	5
도시국 도시부 도시경관디자인실	실장, 도시경관담당(주사, 부주사, 기사) 광고물담당(주사, 주임주사, 주사)	8
도시계획국 도시기획부 도시디자인실	실장, 과장, 과장보좌, 계장, 계원	10
주택도시국 도시계획부 도시경관실	실장, 광고물/조사기획/지구경관정비 /마찌나미경관/ 도시디자인조사연구담당	25
도시계획국 계획부 어번디자인실	실장, 주간, 경과계장, 주사, 담당	10
도시계획국 도시디자인실	실장, 실장보좌, 주사, 주임기사, 전문원	7
도시정비국 도시관리부 도시경관실	실장, 계획계/추진계/옥외광고물계 /경관형성주임	9

4) 일본 도시경관행정의 운영조직

- 일본의 많은 도시가 일반적으로 도시경관행정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도시경관과 또는 도시디자인실을 기획조정부나 도시계획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경관에 대한 지자체 측에서의 정보나 경험 부족, 인적 자원의 한계 등 소프트한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많아 지자체간의 상호교류 또한 매우 활발함
- 일본의 경우 고오베의 도시디자인실,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실, 동경의 세다가야구 기획조정부내 도시디자인실 등 중심운영조직을 두고 있음
- 이들 조직은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보다는 민간과 공공간의 중재와 조정, 그리고 행정부서간의 조정협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경관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주로 시장직속기구성격으로나 또는 기획조정국, 예산관련부서, 실무 도시계획국 등과 연계되어 그 실행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고베나 요코하마 도시경관 관련전문가의 경우처럼 한 직종에서 10-20년 근무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축적하여 경관행정에 대한 산증인으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순환근무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특수한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앞으로의 자치행정 특히 경관행정에 매우 긴요하리라 생각되며, 과도기적으로 현재의 운영조직 내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특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5) 후쿠오카의 도시경관디자인행정 사례

■ 도시경관디자인행정 개요

- 후쿠오카 시는 일본의 도시 중 도시경관조성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 도입의 이상적 모델 사례이며, 경관디자인담당부서를 두고 꾸준한 변화를 모색하여 일본 내에서도 경관에 있어서 디자인도입 사례의 모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가고 있음
- 후쿠오카 시는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경관조례’에 의한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내는 도시경관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책정하여 그 ‘조례’와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간의 획적인 협의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고, 모든 계획에는 주민과의 협의 하에 추진함으로써 주민 유도를 꾀하고 있음

■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 후쿠오카 시는 ‘도시정비국’에 5개 부와 2개 사무소를 두고 도시경관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관리부’에는 ‘도시경관실’을 두고, ‘도시경관조례’를 운용하면서 ‘도시경관형성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함
- ‘도시정비국’ 내에서 대부분의 경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도시정비국’ 내에 따로 ‘도시경관실’을 두고 경관디자인업무만을 담당함

■ 도시정비국 및 도시경관실의 주요사업

- 도시정비국에서는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시가지 재개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도시경관실은 계획계, 추진계, 옥외광고물계를 두고 도시경관, 도시경관 심의회, 옥외 광고물의 규제에 관한 기획입안, 옥외광고물 심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5) 후쿠오카의 도시경관디자인행정 사례(계속)

■ 후쿠오카 도시경관 조례의 운용

- 경관 행정에는 규제뿐만 아니라, 뛰어난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자주적인 활성화 행위를 유도하는 관점을 중요시하여 도시경관조례는 기존의 제도, 수법으로는 컨트롤이 어려운 지구 전체의 경관 형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도시경관 형성지구와 대규모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연, 지도에 의한 유도 및 표창·조성 등에 의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함

■ 조례와 기본계획에 의한 경관조성 4단계

- 후쿠오카 시는 행정과 시민이 서로 협력해서, ‘조례’와 ‘기본계획’을 운용하고, 실제의 도시경관조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① 1단계 : 경관조성의 초점(경관조성의 기본방향/컨셉 설정)

- ▶ ‘도시의 얼굴만들기’, ‘도시의 개성만들기’, ‘도시의 매력 만들기’를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 후쿠오카의 경관을 조성

② 2단계 :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 수립

- ▶ 지역의 특성과 전체의 균형을 살리는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 시역을 10개 유형의 기본 공간으로 구분하고, 도시경관형성지구의 지정을 목표로 하고, 보다 작은 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작성

③ 3단계 : 시민과 함께 하는 지자체 주도의 경관조성 사업 추진

- ▶ 행정의 역할은 민간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등의 정비에 의해서 양호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는 선도적 역할과 늘 행해지는 경관형성의 행위를 계획적으로 조절해 가는 조정적 역할을 수행

④ 4단계 : 다양한 제도에 의한 경관조성 유도 지원

- ▶ 탄력 있고 건설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도시경관조례에 의한 유도와 지원
- ▶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과 공공사업에 의한 선도적 경관형성 등 추진

6)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행정 사례

■ 도시디자인행정 개요

- 개성 있는 상점가, 이국적인 정서가 넘치는 거리, 항구의 특이한 풍물 등은 항구도시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나이 주변 지구에서는 어디 서든 볼 수 있음.
- 65년부터 도심부로서 재정비가 본격화되었으며, 결국 도로, 공원, 건물과 아울러 인간적인 거리로서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도시 디자인 행정이 이 지역을 시초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음
- 녹지와 강변의 보전, 역사적인 자산을 살린 새로운 도시의 재생, 휴식공간을 가진 활기 있는 상업지의 디자인, 바다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해변의 창출, 새로운 주택지의 거리경관 정비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공간의 매력을 갖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도시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등은 모두 동일한 지역적 목표에 따라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디자인을 지향해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행정의 최대의 역할임

■ 도시디자인의 목표

-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재생과 보존에서의 기능성과 경제성, 아름다움, 즐거움, 윤기 넘치는 도시의 미적, 인간적 가치 등을 서로 조화시키는 특징적인 도시 공간의 형성을 목표로 함

■ 도시디자인행정의 특징

- 마스터플랜이나 조례가 아닌 지도를 통해 협의를 유도하는 디자인행정
- 도심에서 주변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디자인행정
- 도시디자인 담당공무원의 장기근무와 민간 신뢰를 기초로 한 디자인행정
- 가로조성사업 중심의 도시디자인 활동
- 도시디자인 사전지도지구 제도의 운영

6)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행정 사례(계속)

■ 도시디자인 업무부서 및 역할

- 요코하마 시는 1971년 도시의 재생과 정비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 도시기획부 안에 도시디자인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공공사업부서와 민간사업부서와 협력하면서 활동을 전개하였음
- 도시디자인실은 건축직, 조경직,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명임
- 도시디자인실의 역할은 ①디자인기획 및 조정, ②보행자 광장, 열린 광장 확보 및 거리조성, ③도로과와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로 운영

■ 도시디자인실의 주요업무

- 도시디자인을 추진함에 있어 가로형성사업과 관련 있는 관계자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징과 매력 있는 공간 만들기를 추진하는 도시디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획적 도시디자인 : 도시 재생과 정비사업의 기획, 입안 등을 수행
  - 조정적 도시디자인 : 거리 만들기 사업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지역의 특징이 있는 공간디자인을 추진
  - 유도적 도시디자인 : 거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칙 확립과 활용 도모
  - 디자인 개발 :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개발
  - 도시디자인 조사·연구 : 도시디자인에 도움을 주는 조사, 연구, PR

■ 주요 대형 프로젝트 구성

- 가나자와 해변타운은 단조로운 주택지구를 활기 넘치는 지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4명의 건축가가 공동 설계한 거리개선, 정비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설계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오호쿠 뉴타운에서는 토지계획 정비사업에 의해 골격을 거리정비와 재생협정에 의해 거리를 관리하는 등 매력있는 거리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시설의 디자인 지침’, ‘거리 만들기 기본협정’을 체결해 각종 시설에 디자인을 고려하고 있음

7)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운영 사례

■ 기본이념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건축물과 환경을 창조. 이런 활동은 항상 지구규모의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세계 규모의 환경에 대한 배려와 지역문화적인 확산을 가지고 있음

■ 운영 및 추진체계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뛰어난 건축물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현 내의 건축물을 표창하는 현창사업, 강연회·심포지엄·전람회 등을 개최하는 기획·홍보·인재육성 사업이 그 중심임
- 유명건축가를 초빙하여 건축물을 건립하여 시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초기에는 경찰서 등 공공건물이나 공영주택부터 시도하였고, 당시 커미셔너의 지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방식을 선정
- 배경에는 계약 시 해당 건물을 짓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을 선정하였으므로 계약 시 발생하는 여타 문제의 발생소지를 줄임

■ 현창사업의 특징 : 우수건축물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

- 1992년 구마모토 현 내의 역사적인 건물 또는 호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 건축물을 KAP/92 선정기준 건축물로서 선정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부터 구마모토 현 내의 질 높은 건축물을 현창하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 상’의 표창을 실시
- 이 상은 우수한 건축물(건축물, 다리, 공원, 기념비 등의 건조물 및 이들로 구성된 일군의 시설 등)을 현창하는 것으로 도시환경 및 건축 문화 등의 향상을 목표로 풍부한 지역창조를 꾀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가 기획, 설계, 시공 및 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시설은 구마모토 현 지사가 표창

7)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운영 사례(계속)

■ 프로젝트 사업의 특징 : 커미셔너에 의한 참가프로젝트의 설계자 추천

-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커미셔너제도 도입
- 커미셔너는 지사가 임명
- 현재의 커미셔너는 2기이며, 1기 커미셔너는 구마모토 국제 건축전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 1년 단위로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 어드바이저는 지역출신이면서 현청과 커미셔너와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는 적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내외의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설계대회 등을 실시하여 그 사업에 적절한 설계자를 선정
- 설계자는 그 건축물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물의 설계를 추진
- 사업의 진행은 지정방식, 경쟁방식, 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 구분
  - 지정방식 : 커미셔너가 설계자를 지정
  - 경쟁방식 :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면서 한 설계안에 대해 여러 업체의 안을 경쟁시켜 커미셔너가 심사
  - 커뮤니케이션방식 : 커미셔너가 설계자를 지정하는 측면은 지정방식과 유사하나 설계과정에서 주민, 건축가,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충분한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기획·홍보·인재육성 사업

- 심포지엄, 강연회, 견학회 등의 개최
- 홍보지,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 발신
- 보도기관 등을 통한 홍보
- 각 단체와의 기획·홍보 협력 등

8) 일본의 도시계획 공무원 채용 제도: 공무원 제도 보완 전문성 제고

- 일본의 경우 도시계획 공무원 채용 시 도시계획직렬은 없으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 및 관련분야 경력자만이 채용될 수 있도록 2차 면접이나 논문심의를 통하여 계획과 직접관련이 있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계획적 접근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짐
- 의사소통기능과 발표능력을 중시함으로써 단지 부서 내에서의 계획뿐만 아니라 시민과 다른 부서들과의 협상능력, 설득 능력을 도시계획 공무원의 중요한 자질로 삼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 공무원 채용은 정기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전공자 및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자를 중심으로 직원을 배치, 도시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실무 경력자의 경우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이처럼 정기 공무원 시험을 통한 도시계획 공무원을 뽑는 현재의 채용방식은 전공자 채용이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등의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일본 도시계획공무원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3-5년 간격의 인사이동 사이클을 기본으로 하지만 계획의 연관성 확보 및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동경	요코하마
채용방법	• 정기적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공무원채용시험 실시	• 정기적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공무원채용시험 실시
인사이동 원칙	• 원칙적으로는 같은 소속으로 3년을 경과하면 이동의 대상이 됨 • 여러 가지 행정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국간의 이동 활발. 특히 주임, 계장 승진 시에는 국간·국내 이동이 제도화	• 5년의 사이클로 이동을 거듭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 능력주의의 원칙에 따른 인사 위원회에 능력 인정 시험이 실시 • 관련분야 경력자 가산점제도 실시

3. 국내 디자인행정조직 관련 참고사례

- 1) 서울특별시 경관행정조직의 강화방안
- 2) 광주광역시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 3) 충청남도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 4) 경기도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 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경관 전담반 설치계획

1) 서울특별시 경관행정조직의 강화방안

- 행정측면에서 볼 때 경관행정의 성패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경관행정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확대되어질 경관디자인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보다 강력한 조정 및 협의기능을 갖도록 그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 체제에서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사업실행부서 내 존치

- 현 주택국 산하 도시경관과를 유지하되,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체제 개편없이 지금보다는 강력한 경관관련사업의 협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관심의 대상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 이 방안은 주택국의 업무가 건축 및 주택에 관련되어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설계 감각(design mind)을 가진 건축직 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경관에 관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도시경관업무의 상당부분이 공공시설의 계획이나 건설에 관련된 공공사업의 조정업무 위주이고 이들 업무는 주로 도시계획국의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도시경관과가 도시계획국 소속일 경우에 비해서 원활한 협의조정기능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음

■ 도시계획국 산하로 직제를 변경하는 방안: 도시경관계획부서로 변경

- 경관행정의 주요 업무가 공공사업 상호간의 연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관행정 관련부서 간 협의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과를 현재의 주택국으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옮기는 방안임
- 이 경우는 건축심의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주택국의 유관부서에 업무를 인계하고 공공적 성격의 광고물 업무와 경관기업업무 및 공공사업의 디자인적 측면의 협의 조정권을 강화하여 도시경관과를 운영하는 방안임

1) 서울특별시 경관행정조직의 강화방안(계속)

- 이 방안은 공공부문 관련부서가 많은 도시계획국 산하에서 원활한 협의조정을 기할 수 있는 점과 경관행정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도시경관관의 주요업무가 디자인 감각이 있는 건축 전문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할 때, 현재의 도시계획국은 주로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

- 그러나 소관국과 소관 전문직제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는 풍도가 조성된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하에 도시디자인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할 만함

■ 신규 상위조정기능의 부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상위기획조정기구화

- 앞에서 논의된 2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강력한 경관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새로운 상위조정기관에 직제를 두는 방법이 있음 예를 들면, 기획 관리실 산하에 직제를 두어 협의조정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임
- 이 방안은 단기적인 사업 목적을 강력히 추진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임
- 이 방안은 서울시 본청의 경우에는 조직이 방대함으로 인하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지 모르나, 경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구 단위의 도시경관관련부서(도시디자인실)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연구

2) 광주광역시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 단기적인 구성방안

- 경관관련 해당실국의 연락조정을 위한 「연락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상호 효과적인 시책 전개
- 경관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한 부서로 전문화 (부서 간 업무조정)
- 개발업무에 대한 경관관련업무 위상 강화
-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 조율 강화
- 경관업무를 전담하는 경관관리담당자 제도 도입 및 전담자 배치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 장기적으로 경관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신설

■ 중장기적인 구성방안

- 경관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경관시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경관업무를 종합할 수 있는 경관전담부서로서 과단위의 「경관관리과」를 신설
- 경관관리과는 문화정책실 문화수도지원과내의 경관담당업무를 확대 개편 및 명칭 변경하고 관련된 부서와의 통합협의체계를 구축
- 경관관리과의 역할은 신설되는 새로운 경관업무의 수행, 이관이 가능한 기존 부서의 경관관련 업무 수행, 완전 이관이 불가능한 경관관련업무의 실국 간 연락 및 조정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공공사업 및 시설물 경관성 검토
  - 대형 또는 공동주택 경관심의 및 유도
  - 지구별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및 관리
  -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의 통합관리 및 경관형성 매뉴얼 개발
  - 경관형성사업구역 경관관리
  - 경관형성사업의 추진
  - 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 조직 및 운영
  - 도시경관상 및 마을만들기 풍경상 제정 및 운영 등

※출처: 광주도시경관기본계획 2020

3) 충청남도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 단기적인 구성방안 : 현 조직과 제도를 활용, 전담자 배치

- 경관관련 업무의 주무관리 부서를 협의·의무화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며 경관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한부서로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업무에 대한 경관관련업무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조율을 강화하도록 함
-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 현 도시계획계에 경관업무 전담자를 배치함

■ 중기적인 구성방안 : Task Force팀의 구성

- 중기적으로는 경관관련 전담부서를 조직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업무를 상호연계·보완하기 위한 Task Force팀을 구성함
- Task Force팀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심의위원회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개별 심의위원회에서는 경관관련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 이를 기반으로 향후 경관심의위원회·경관조례·경관부서를 조직할 수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함

■ 장기적인 구성방안 : 경관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관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가능하므로, 중기의 T/F팀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받아들여 하나의 부서 형태로 조직하여 추진하도록 함
- 경관관련 전담부서는 경관시책을 개발하고 보너스제도를 도입토록 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함

※출처: 충청남도 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4) 경기도의 경관행정 추진체계(안)

■ 단기적인 구성방안

- 첫째, 건축, 주택, 도시개발 등 개발부서가 추진하는 건축 및 사업행위 중 경관관련 직·간접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경관관련 업무를 주무 관리하는 부서(현재 경기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에 반드시 협의결재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둘째, 경기도 조직 내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관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한 부서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경기도 경관관련 업무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발관련업무와 정책협의과정에서 경관관련 시책이 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위해서 경관관련 업무의 위상이 제고함
- 넷째, 경관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경기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에 경관업무를 전담하는 ‘경관관리담당자제도’ 도입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구성방안

- 경관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경관시책을 개발하고 업무조정과 개발허가과정에서 경관을 체크하기 위해 계(係)단위의 경관전담부서 기능으로 「경관관리팀」을 경기도청 도시계획과에 신설하도록 하며, 경관관리팀은 크게 기획, 조정, 유도의 업무기능을 수행함
- 기획업무는 경관정비를 위한 방안의 구상과 일반 업무이고, 조정업무는 경관정비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며, 유도업무는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비기준을 수립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함
- 현재의 열악한 경기도 경관행정에 비추어 경관관련 기획·조정·유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경관업무를 종합한 경관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출처: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경관전담반 설치계획

■ 도시경관전담반의 설치 배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쟁력에 있어서 도시경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도시경관형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국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국과는 별도로 도시경관전담반을 설치할 계획함

■ 도시경관전담반의 조직

- 도시경관전담반의 책임자는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건설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 제분야를 조정하고 전체 개발과정을 총괄·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담반의 총인원은 각과에 파견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총 20명 정도로 함
- 경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반의 책임자는 차장수준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함
- 경관전담조직은 도시경관계획가를 책임자로 하는 상근조직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담당 조직을 두도록 함

■ 도시경관전담반의 기능

- 경관전담조직의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계획 및 사업에 대해 도시경관위원회의 자문(또는 심의)을 받도록 함
  - ① 경관계획의 수립
  - ② 경관형성사업의 집행
  - ③ 경관협정의 승인
  - ④ 도시경관위원회 개최
  - ⑤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 ⑥ 민간부문 건축물 경관내용 검토

※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 4. 국내 디자인행정일반 관련 참고사례

- 1) 광주광역시 경관 가꾸기 실천방안
- 2) 광역-기초지자체간 경관디자인행정
- 3) 경관계획의 수립지침의 예
- 4) 디자인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

### 1) 광주광역시 경관 가꾸기 실천방안 - 지자체 행정의 측면

- 하나, 광주시 과거, 현재, 미래의 경관을 담아낼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함. 요컨대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꾸어 가는데 필수적으로 내딛어야 할 첫걸음임
- 둘, 경관 가꾸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함. 누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 바로 조례라고 할 수 있음
- 셋, 도시경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 하천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경관계획 설계지침서』를 발행하여 보급함. 실제 지역별, 공간별로 경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계에 관한 지침(Guideline)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넷, 전 지역으로의 확산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경관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경관 가꾸기를 실천해보는 것도 필요함. 경관시범지구는 모델지구지정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행착오를 시정해가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섯, 지자체행정조직이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도시경관이 탄생하기까지는 다양한 분야가 관여하고 있음. 토목, 건축, 조경, 교통, 문화관광 등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따라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경관기획실』을 설치 운영해야 함
- 여섯, 지역의 모든 주체가 공동목표(개성 있는 도시상)를 가져야 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함. 그 대안으로서 시민+기업+시민단체+전문가+자치단체=『도시 경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곱, 가로건축, 옥외시설, 정원, 담장 등 각 부문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표창제도』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경관디자인 의식을 고취시키며 실제 도시경관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1) 광주광역시 경관 가꾸기 실천방안 - 지자체 행정의 측면(계속)

- 여덟, 도시경관에 대한 계몽 홍보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공동체』가 필요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아홉, 도시의 광장, 건물, 공원, 다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모제』를 시행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육성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
- 열, 도시경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의문의사항 등에 상담할 수 있는 『도시경관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함 또한 시민 세미나 등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속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열하나, 건축물, 조경, 토목 등의 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화해야 하며, 건축, 조경, 환경, 미술 등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도시경관심의』를 함으로써 미연에 경관훼손을 방지함 특히 도시경관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과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경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함
- 열 둘, 지자체 내부적으로 경관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경관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고 제안을 해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될 우려가 있고 창의적인 경관행정을 기대하기 힘들 것임 조경, 환경생태, 건축, 토목 등 경관관련 전문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열 셋, 경관분야 예산을 확보해야 함 경관분야의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 도시경관에 대한 계몽 및 교육 등 체계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실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추진함 예산확보 없이 그저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

2) 광역-기초지자체간 경관디자인행정 -광역지자체의 역할

■ 시·군 경관계획 작성에 도 경관계획내용 반영 유도

- 도 경관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군 경관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 경관계획에서 시·군 경관계획 작성 시 요구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도 경관계획에 맞추어 시·군 경관계획 작성에 요구할 사항은
  - ① 시·군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② 도 경관계획의 목표에 맞추어 시·군 경관계획의 일관성 유지
  - ③ 인근 시·군 경관계획 간의 협조 유도
  - ④ 자연자원보호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시·군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로경관형성, 랜드마크의 보전과 경관관리, 역사지구의 보전, 조망보전, 도시전체의 조망, 취락의 경관형성과 관리 등임.
- 도 경관계획의 목표에 맞추어 시·군 경관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재개발, 시가지정비 등 특색 있는 도시경관정비 형성, 개발과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 광역적 수준의 녹지 및 산림의 보전과 풍경유지, 도의 자연자원, 관광자원의 유지에 관한 계획방향이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인근 시·군 경관계획 간의 협조 유도와 관련해서는 인근 시·군 경관계획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주요교통로, 해안선, 하천, 산악 등 지역 간 경관유지의 일체성을 유도함. 시·군간 경계부 경관계획에서도 지역 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도의 산림, 해안, 농경지, 개발에서 제외된 풍경자원 등 도의 자연자원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함.

2) 광역-기초지자체간 경관디자인행정 -광역지자체의 역할(계속)

■ 도의 통일된 경관기준 설정

- 도 경관계획은 통일된 경관기준을 설정하여 시·군 경관계획에 이를 적용하여 도전체 경관의 체계성을 도모하도록 함.

■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의 경관계획 지도

- 도는 시·군의 경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시·군의 경관계획 승인 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또한 경관계획을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설계 평가 후 경관사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발허가 시에도 경관계획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내지는 디스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함.

■ 도의 경관계획과 시책의 홍보

- 우수한 경관계획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따라서 경관계획에 대한 도민의 합의 형성과 도민에게 경관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도는 공청회, 주민참여를 통해 경관계획과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책이 필요함.

■ 도의 시·군지역간 경관계획의 모순조정 역할 수행

- 도내 시·군 간에는 각기 다른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시·군 간의 경관계획과 시책도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
- 따라서 도는 시·군 경관계획과 시책추진과정의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인근 지역 간에 경관계획 및 시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순, 괴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도 경관계획을 원만히 달성시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함.

2) 광역-기초지자체간 경관디자인행정 -기초지자체의 역할(계속)

■ 개발허가나 심의시 시·군이 적용할 경관심의기준 마련

- 개발계획에 대해 시·군이 의도하는 경관계획과 시책을 효과적으로 투영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허가과 심의 시에 경관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스카이라인, 건물형태, 조망권 컨트롤 등을 경관심의기준 내용에 포함시켜 적용해 나감.

■ 개발시장의 목표와 경관계획목표 간의 조화

- 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개발만을 추구하여 개발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경관계획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개발사업자에게 인식되는 것이 보통임.
- 경관계획은 개발계획과 융화되고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관을 어떻게 개발시장에 적용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함. 이를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경관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개발사업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경관계획 목표도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합의 도출

- 시·군 경관계획은 시·군 지자체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도 단위보다 훨씬 더 잦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관계획보다 주민의견수렴과 합의도출이 더 강조됨.
- 즉 경관을 주민과 합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됨.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경관연출을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는 홍보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개발업자와 NGO와의 의견조율을 수시로 가질 필요가 있음.
- 개발업자 내지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군 지자체는 도 요구기준과 시·군 요구기준간의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광역-기초지자체간 경관디자인행정 -기초지자체의 역할(계속)

■ 도 경관방침을 시·군 경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

- 시·군 지자체는 도시에서 수립한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방침을 개발계획과 경관계획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여야 함. 도의 경관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주체인 시·군 지자체가 외면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음.
- 실천성 있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도 경관계획 틀 위에서 시·군 지자체가 도 경관방침을 적극 반영한다면 도 경관계획은 성공적 달성이 가능함.
- 시·군 지역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시·군 단위에서의 경관관리 기본계획은 도의 경관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함.
- 경관관리 기본계획의 위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는 구별해서 작성하되 시·군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등과 상호 연계과정을 가지게 하여 경관관리 기본계획상의 중요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시·군 경관관련 공무원 및 개발사업자 교육·훈련 실시

- 최근 들어 급격히 대두된 경관관련 규정과 업무는 시·군 공무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집행을 포함한 경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행을 위해 경관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음
- 시·군 단위의 경관계획과 시책 수립·집행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집단은 경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자들임. 이들이 경관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경관보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관형성관리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관계획과 시책 방향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 경관계획관련 인허가 절차 교육 등 경관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3) 경관계획의 수립지침의 예

구성	경관계획 수립지침
기초조사 및 경관관리 장기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군별로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지역 고유의 자연 및 역사 환경 보존, 양호한 경관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유도 등 시민과 행정의 의지가 담긴 장기적이며 실천 가능한 목표 수립</li> <li>-도시 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보존, 시·군 내 가로경관 및 도심지 경관형성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도시경관관리 목표 및 미래상 정립</li> <li>-도시의 자연·문화경관조건과 개발현황분석을 통한 적절한 토지이용 유도</li> <li>-국립공원,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형 해안 및 하천, 경관가치가 높은 삼림 및 문화재 보호구역 등 보전원칙 수립</li> </ul>
경관 기본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관 형성 주요 전략 제시</li> <li>-생태적, 역사적,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보존지구 설정</li> <li>-도시 주요 경관축 및 중점경관관리지구 설정</li> <li>-중심지구와 주거용 근린지구의 경관형성 기본 구상</li> <li>-특정적인 조망권 보호구상</li> <li>-기존의 도시패턴, 보존해야 할 경관자원 및 생활환경 등이 고려된 적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지침</li> </ul>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지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활권별 또는 특정지구 등 지구단위별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건축물 이미지를 주도록 외관디자인에 대한 지침 제시</li> <li>-도심의 주요가로경관 조성 지침 제시</li> <li>-지형 및 조망권을 배려한 건물배치 지침 제시</li> </ul>
일체성 있는 도시 스카이라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주요 상징공간, 역사/문화경관, 주요 랜드마크 자원을 고려한 도시스카이라인을 계획하여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형성 유도</li> </ul>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포함</li> <li>-주요 지표물 및 조망점 개발계획</li> <li>-도시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설정한 도시색채기본계획</li> <li>-도시 CI계획</li> </ul>
계획승인 시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의 수용여부</li> <li>• 기초경관조사내용의 정확성</li> <li>•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의 보존성</li> <li>•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경관영향 검토</li> <li>• 기본구상의 적정성 여부</li> <li>• 개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세부항목 등</li> </ul>

4) 디자인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

■ 시민공개공모방식

- 시민 전반에 디자인 안을 공모하고, 가장 우수한 안을 선정하여 도입함
- 공모에 있어서는 내용, 선정방법, 선정 후의 구체화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는 데에, 응모요강을 작성하여 신문, TV, 홍보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줌
- 디자인 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구체화할 때 문제가 되는 점을 사전에 상정하고, 조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함

■ 경쟁입찰방식

- 복수의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불특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안을 모집하고, 가장 우수한 안을 제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일임함
- 지명 경쟁입찰의 경우, 지명할 전문가의 범위를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의해 검토, 설정하는데, 참가한 전문가에게 일정한 사례나 디자인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불특정 전문가에게 공모할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설정하는 경우와 특별히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이나 주어진 조건, 기간 등에 맞추어 어떤 조건을 설정할지를 결정함

■ 지정발주방식

- 지정발주는 특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의뢰함
-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의해 사전에 특정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정발주를 실시함
-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에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를 실적, 전문분야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함

5. 국내 디자인행정 제도 관련 참고사례

- 1)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 규정
-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5) 프랑스 라데팡스: 1%예술품설치조례

1)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 규정: 협의회, 위원회

제4조 (실무협의회) ① 도시공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건축·교통·건설·도로·공원녹지·문화정비 분야담당과장 등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 2. 8, 2005. 2. 24)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공간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 기타 시장이 도시공간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 (자문위원회) ①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건축·교통·조경·색채분야 등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며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회 사항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 규정: 업무절차 등(계속)

제6조 (디자인자문단) ①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디자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대학교수 등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인원은 부문별 각각 2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업무절차) ① 과·소장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디자인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로 협의 요청할 때에는 업무계획서를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요청 부서장의 결재를 반드시 얻은 후 협조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과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디자인업무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 협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도시디자인과장은 협의요청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협의사항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회송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공간 형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공간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도시공간 형성의 기본 구상
3. 지역 또는 권역별 도시공간 형성 가이드라인
4. 이미지 요소별 도시공간 형성 가이드라인
5. 도시공간형성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 방향
6. 기타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②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공간형성을 위한 권고, 조언 등)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도시공간형성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도시공간 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2조 (여론의 수립) 도시디자인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기타 회의를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립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별표 1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별표 2의 관리대상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권고
5. 그 밖에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먹구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보존·보존함은 물론, 발굴·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도시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시장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구청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근거하여 실시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대의협력의 증진) 시장은 도시경관의 보존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도시경관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경관계획 등의 수립(계속)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이하“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계획의 구분) ① 시장이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중심지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교통·산업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6. 야간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7. 기타 시민 요구와 시장이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지구내의 경관계획
- ② 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주민들에게 14일동안 관계서류 공람공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관계획의 내용)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해당 분야별·권역별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경관지침 제시
5.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색채계획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7. 기타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관리의 협력)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행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지침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 등(계속)

제23조 (도시경관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도시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2항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2조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2항 도시경관형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6조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상 시상에 관한 심사
7.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도시디자인실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배려한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도시디자인실을 두거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경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내용,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미술장식심의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미술장식 설치)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순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부시장, 문화경제국장, 순천시 의회의원 1인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4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추천제로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디자인·사진 분야 등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6. 미술장식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7. 미술장식품 가격의 적정성  
 8. 기타 미술장식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② 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 미술장식 가격결정 및 유지관리(계속)

제11조(미술장식품 설치의무 통보 및 예치, 설치시기와 확인)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 하여야 하며, 수준 높고 다양한 미술장식 설치를 위해 건축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순천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된 금액으로 미술장식설치에 따른 작품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접수된 미술장식을 순천시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작품을 선정토록 한다.  
 ④미술장식품 설치 위치 선정은 순천시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품 모집공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순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⑥건축주가 제2항에 응하지 않을시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 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순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거 순천시 금고에 예치된 금액을 순천시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작가에게 설치 완료 후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2.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제14조(미술장식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변경, 교환, 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미술장식이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시행규칙  
: 미술장식심의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 등)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소요금액을 순천시금고에 예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선정·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미술장식 공모) ①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모집 공고는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일간지는 공모금액에 의한 지역제한에 따라 지방지 또는 중앙지 1개사에 의하고, 공고비용은 예치금액에서 충당한다.  
②미술장식 종류는 설치예정지역과 설치위치 등을 감안 지역특성에 부합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실용성·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주제를 선정 공모한다.  
③미술장식 공모 공고문에는 설치예정지역과 설치위치, 공모개요, 응모자격, 공모일정, 공모 조건, 응모요령, 제출도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응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미술장식 응모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결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모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결정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9조에 의한다.  
②심의대상 작품이 다수인 경우와 공모대상 미술장식 종류 및 공모금액에 따른 지역제한 범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결정사항 통보) 순천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계획 승인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프랑스 라데팡스: 1% 예술품 설치조례

■ 1% 예술품 설치조례 제정의 배경

- 라데팡스는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최고의 비즈니스 단지를 컨셉으로 기능만을 중시함이 아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 관광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음
- 전체적 도시설계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오픈 스페이스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 1% 예술품 설치조례의 주요 내용

- 프랑스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를 예술품 설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음
- 공공건물의 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등의 주변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설치하여야 함
- 설치되는 예술품은 시각적 조형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예술가가 아닌 다른 기술자(조경가 등)들이 설계한 특별한 컨셉이 있는 가로시설물, 안내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예술품 설치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건축비의 1%가 되며, 단 이 금액은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함.
- 설치 금액이 9만 유로 이상인 경우, 예술품 설치 위원회에 그 선택권을 이양해야 함
- 위원회는 발주자, 지방 문화예술성 대표자, 건축물의 이용자, 발주자나 지방 문화예술성에서 추천한 예술가 중 한사람으로 구성함
- 의회는 발주자에게 여러 명의 예술가와 예술품을 발주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후 3개월 이내에 예술가와 예술품을 결정해야 함